

Glossary of Common Debt Collection Terms

English

September 2020

추심 관련 일반 용어집

한국어 (Korean)

2020 년 9 월

About the Glossary

To help consumers during the debt collection process, the 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 created this glossary, which includes commonly used terms in debt collection communications plus references (laws, agencies) important for consumers to know. Bilingual glossaries in the top 10 languages spoken by New Yorker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re available at nyc.gov/dca

Note:

- *Italicized words* in descriptions are also defined in the glossary.
- Unless stated otherwise, all descriptions reflect New York City laws and rules.
- This glossary is not intended as legal advice.

*DCWP is the Agency's new name. In all references, DCWP also means 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the Agency's old name. The Agency is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legal name change in public information. In the meantime, DCWP and DCA are the same City Agency.

용어집 소개

소비자의 추심 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부(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 DCWP)*는 추심 관련 의사소통과 법률 및 기관 등에서의 참조 자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는 용어를 모아 이 모음집을 만들었습니다. 영어 능력이 제한된 뉴욕 시민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10 개 언어로 영어-외국어 용어집을 제작했으며, 이는 nyc.gov/dca 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 용어 설명에 *이탤릭체로 된 단어*는 해당 용어집에서 찾을 수 있는 단어입니다.
-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이상 모든 설명은 뉴욕시의 법률과 규정을 반영한 것입니다.
- 본 용어집은 법률 자문 용도가 아닙니다.

*DCWP 는 기관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DCWP 가 언급되는 모든 경우는 기관의 이전 이름인 소비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DCA)을 함께 가리키는 것입니다. DCWP 는 현재 공적 정보에 해당 상호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은 DCWP 와 DCA 가 동일한 시 기관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Glossary / 용어집

A

Abusive language

Swear words (or curse words) or any words that insult or offend.

A *debt collector* may not use abusive language when attempting to collect a *debt*. This includes in writing or when speaking to consumers.

폭언

욕설(또는 악담) 등 모욕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모든 말.

추심업자는 채무를 추심하려 할 때 폭언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소비자와 서면이나 구두로 소통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Account

A record or file of a *debt*.

A *debt collector* often refers to an account when claiming a consumer owes money.

계정

채무에 대한 기록 또는 파일.

추심업자가 소비자에게 채무가 있다고 주장할 때 주로 계정을 언급합니다.

Accrued interest

The amount of *interest* (cost to borrow money or purchase goods and services on credit) added to a *debt*, which increases the amount of money a borrower owes.

Consumers have a right to request an *itemization of a debt* showing accrued interest and to *dispute a debt*.

경과 이자

채무에 추가되는 *이자*(돈을 빌리거나 신용 거래로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비용)로, 대출자의 총 채무 금액이 증가합니다.

소비자는 경과 이자를 표시하는 *채무 명세서*를 요청하고 *채무 관련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Arrears

An unpaid and overdue *debt*.

연체금

연체 및 미불 채무.

B

Bankruptcy discharge

A court order that means a consumer does not have to pay a *debt* and a *creditor* or *collector* may no longer attempt to collect the debt.

파산 면책

소비자가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가 더는 추심을 할 수 없다는 법원 명령.

Better Business Bureau (BBB)

A 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 that promotes ethical marketplace practices.

In addition to filing a complaint with DCWP, consumers can file a complaint about a *debt collector* with BBB.

DCWP:

Call 311 or visit nyc.gov/dca

BBB:

Visit bbb.org and click “File a Complaint.”

거래 개선 협회(Better Business Bureau, BBB)

윤리적인 시장 관행을 촉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DCWP 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는 *추심업자*에 대해 BBB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DCWP: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ca 를 방문하십시오.

BBB:

bbb.org 를 방문하여 “이의 제기(File a Complaint)”를 클릭하십시오.

C

Cease communication letter

A letter a consumer may send to a *debt collector* demanding that the collector stop any further contact with the consumer about an *account*. A consumer may send the letter at any time in the *collection* process.

Instructions and a template Cease Debt Collection Communication Letter are available at nyc.gov/dca

추심 중지 안내문

소비자가 *추심업자*에 보낼 수 있는 서신으로, *계정*과 관련된 연락을 중지할 것을 요청합니다. 소비자는 *추심* 과정 중 언제든지 이 서신을 보낼 수 있습니다.

추심 중지 안내문 관련 지침과 양식은 nyc.gov/d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harge off

Any amount that a *creditor* no longer expects to be repaid and writes off as a bad debt for accounting purposes even though the debt is still owed.

A charge off appears on a consumer’s *credit report*.

상각

아직 채무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계 관련 의도로 *채권자*가 상환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악성 부채로 취급하고 탕감하는 금액.

상각 기록은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에 표시됩니다.

Collection

The process of seeking money claimed to be owed.

Debt collectors must obey federal, State, and New York City laws and rules about what they can and cannot do in the collection process.

추심

주장에 따라 채무를 추심하는 과정.

*추심업자*는 추심 과정에서 허용되거나 허용되지 않는 행위와 관련하여 연방, 주 및 뉴욕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Collection fees

A fee (or charge) that a *debt collector* adds to the amount it attempts to collect from a consumer. The fee must be authorized by an agreement or permitted by law.

Consumers have a right to request an *itemization of a debt* showing any collection fees and to *dispute a debt*.

추심 수수료

추심업자가 소비자로부터 추심하려는 금액에 추가하는 수수료(또는 요금). 해당 수수료는 반드시 계약으로 인가되거나 법률상으로 허용되어야 합니다.

소비자는 추심 수수료를 표시하는 *채무 명세서*를 요청하고 *채무 관련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Collector (See Debt collector)

추심인(추심업자 참조)

Communication disclosures

In all letters and conversations with consumers, *debt collectors* must disclose:

- a call-back number to a phone that is answered by a natural person;
- the name of the debt collector;
- the *original creditor* of the debt;
- the name of the person to call back; and
- the amount of the *debt* at the time of the communication.

In all letters to consumers, debt collectors must include their *DCWP license number*. An example is 1234567-DCA.

의사소통 시 공개 내용

소비자와 추심업자 사이의 모든 서신과 대화에는 다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 실제 사람이 응답하는 답신 전화번호
- 추심업자 이름
- 채무의 원채권자
- 답신을 할 개인의 이름
- 의사소통 당시 채무 금액

추심업자는 모든 소비자에 보내는 서신에 해당 업자의 *DCWP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예: 1234567-DC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A U.S. government agency that enforces federal consumer financial laws and protects consumers in the financial marketplace.

In addition to filing a complaint with DCWP, consumers can file a complaint about a *debt collector* with CFPB.

DCWP:

Call 311 or visit nyc.gov/dca

CFPB:

Visit consumerfinance.gov and click "Submit a Complaint."

소비자 재정 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연방 소비자 재정법을 집행하고 금융 시장의 소비자를 보호하는 미국 정부 기관.

DCWP 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는 추심업자에 대해 CFPB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DCWP: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ca 를 방문하십시오.

CFPB:

consumerfinance.gov 를 방문하여 "이의 제기 제출(Submit a Complaint)"을 클릭하십시오.

Consumer Reporting Agencies (CRA) (See Credit Bureaus)

소비자 조사 기관(Consumer Reporting Agencies, CRA)

(개인 신용 평가 기관 참조)

Contact and call frequency restrictions

A *debt collector* may contact a consumer at most two times in a seven-day period and only between 8:00 a.m. and 9:00 p.m. Eastern Standard Time (EST).

Debt collectors may not contact consumers at work if the collector is aware that a consumer's employer does not allow such contact.

연락 및 통화 빈도 제한

추심업자는 소비자에게 7 일간 최대 2 회 연락할 수 있으며 오전 8 시부터 오후 9 시(동부 표준시 기준)까지만 연락할 수 있다는 규정.

추심업자는 소비자의 고용주가 이러한 연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경우 소비자의 직장으로 전화할 수 없습니다.

Contest a debt (See **Dispute a debt**)

채무에 대한 항변(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참조)

Credit

The ability of a consumer to borrow money with the promise to repay it, plus any interest and fees, at a later date. As examples, credit includes loans and credit cards.

신용

소비자가 차후 날짜에 이자 및 수수료와 함께 갚겠다는 약속을 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 예를 들어 신용에는 대출과 신용 카드 등이 있습니다.

Credit Bureaus

(also *Credit Reporting Agencies, Consumer Reporting Agencies*)

Private companies that collect and share consumer credit information and make it available on *credit reports*.

The main credit bureaus in the U.S. are Equifax, Experian, and TransUnion.

Consumers can dispute incorrect information on their credit report, including if they have been a victim of identity theft.

개인 신용 평가 기관

(*신용 조사 기관 및 소비자 조사 기관*)

신용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신용 보고서*에 게재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 기업.

미국의 주요 개인 신용 평가 기관으로는 Equifax, Experian 및 TransUnion 이 있습니다.

소비자는 신용 도용의 피해자가 되는 등 자신의 신용 보고서에 잘못된 정보가 기재된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Credit Report

A record of a consumer's credit history, as reported by creditors and other sources, including:

- employment;
- addresses;
- credit inquiries;
- credit cards and loans;
- *accounts*;
- liens;
- wage *garnishments*; and
- other data.

Consumers can request free credit reports at AnnualCreditReport.com. Due to COVID-19, consumers can get free online reports more frequently than once a year. Monitor the website for updates.

신용 보고서

소비자의 신용 이력. 채권자 및 다음 내용을 토대로 합니다.

- 고용 이력
- 주소
- 신용 조회
- 신용 카드 및 대출
- *계정*;
- 선취 특권
- 임금 *차압*
- 기타 데이터

소비자는 AnnualCreditReport.com 에서 무료로 신용 보고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COVID-19 의 일환으로 소비자는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연 1 회 무료 온라인 보고서를 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redit Reporting Agencies
(See **Credit Bureaus**)

신용 조사 기관
(개인 신용 평가 기관 참조)

Creditor
(also *Original Creditor*)

A person, company, or entity to whom the *debt* is claimed to be owed. The original creditor is the person or business that provided the original service, product, or credit that is the source of a debt collection attempt.

A creditor may collect debt on its own or use third-party *debt collectors* to attempt to collect a debt.

채권자
(원채권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주장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주체. 원채권자는 기존 서비스, 제품 또는 신용을 제공하여 현재 추심의 원인이 되는 개인 또는 기업입니다.

채권자는 직접 추심하거나 제 3 자의 추심업자를 통해 채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Current balance
(also *Outstanding balance*)

The total amount claimed to be owed.

Consumers have a right to request an *itemization of a debt* that shows the current or outstanding balance.

현재 지불 잔금
(미불 잔금)

채무로 주장되는 총금액.

소비자는 현재 지불 또는 미불 잔금을 표시하는 *채무 명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D

DCWP license number

A number assigned by DCWP to a licensed *debt collector*. An example is 1234567-DCA.

Debt collectors must include their DCWP license number on all written communications.

DCWP 면허 번호

DCWP 에서 면허가 있는 추심업자에 부여한 번호 (예: 1234567-DCA).

추심업자는 반드시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모든 서신에 해당 기관의 DCWP 면허 번호를 포함해야 합니다.

Debt

The money a consumer owes, or is alleged to owe, a *creditor*.

Consumer debt is debt related to personal, family, or household purposes.

Consumers have a right to request an *itemization of a debt* and to *dispute a debt*.

채무

소비자가 채권자로부터 빌렸거나 빌린 것으로 주장되는 돈.

소비자 채무는 개인, 가족, 또는 가구 관련 용도의 채무를 말합니다.

소비자는 *채무 명세서*를 요청하고 *채무 관련 이의 제기*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

Debt collector

(also *Collector, Debt Collection Agency*)

A private company or person—including a debt collection attorney or law firm—that attempts to collect personal or household debt from New York City residents. The debt collector may:

- own the debt (purchased from a *creditor*) and collect for itself; OR
- be hired by a creditor or other company to assist in collecting the debt.

Both in-State and out-of-State debt collectors must have an active DCWP license and obey New York City laws and rules. To verify if a debt collector is licensed, consumers can:

- Visit nyc.gov/dca and click “Search for a DCA Licensee” in the For Consumers & Workers module.
- Contact 311 (212-NEW-YORK outside NYC) and say “Business Background Check.”

Debt settlement or payment plan

An agreement by the *debt collector* to accept from the consumer an amount less than the originally claimed balance either as a payment in full or as scheduled partial payments.

The debt collector must send the consumer, within five business days, a letter confirming the agreement which must include:

- name and address of the consumer;
- date the agreement was made;
- name of the *original creditor*;
- amount due and the due date of each payment;
- name of the debt collector;
- name of the debt collector employee, or employee’s supervisor, who reached the agreement;
- address where the consumer should mail payments; and
- any other terms or conditions of the agreement.

Debtor

A consumer who owes or is claimed to owe money to a *creditor*.

추심업자

(추심인, 추심 기관)

뉴욕시 거주자로부터 개인 또는 가구 채무를 추심하는 민간 기업 또는 개인(추심 전문 변호사 또는 법률 사무소 포함). 추심업자는

- 채무를 직접 보유하여(채권자로부터 구매) 직접 추심하거나
- 채권자 또는 기타 기업으로부터 고용되어 추심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주 내외 추심업자 모두 유효한 DCWP 면허 번호가 있어야 하며, 모든 뉴욕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추심업자의 면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소비자는

- nyc.gov/dca 를 방문하여 “소비자 및 근로자용(For Consumers & Workers) 모듈에서 “DCA 면허 보유자 검색(Search for a DCA Licensee)”를 클릭하거나
- 311 번(뉴욕 시외의 경우 212-NEW-YORK)으로 전화하여 “비즈니스 백그라운드 체크(Business Background Check)”라고 말씀하십시오.

채무 상황 또는 지급 계획

소비자가 기존에 주장된 잔금보다 적은 금액을 일시불 또는 부분 지불 계획에 따라 납부하기 위해 추심업자에 보내는 계약서.

추심업자는 소비자에게 영업일 기준 5 일 이내로 계약을 확정한다는 내용과 함께 다음을 포함해야 합니다.

- 소비자의 이름과 주소
- 계약 날짜
- 원채권자 이름
- 각 납부 금액 및 기한
- 추심업자 이름
- 계약에 합의한 추심업자 직원 또는 해당 직원의 감독관 이름
- 소비자가 잔금을 납부할 주소
- 기타 계약 내용 및 조건

채무자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빌린 것으로 주장되는 소비자.

Default

(also *Defaulting on a debt*)

Failure to meet the repayment obligations on a *debt*.

A default can occur when a consumer:

- is unable to make timely payments;
- misses payments; or
- avoids or stops making payments.

체납

(채무 불이행)

채무에 대한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함.

다음의 경우 소비자의 체납에 해당합니다.

- 기한에 맞춰 상환하지 못함
- 잔금 미납
- 상환 회피 또는 중단

Default Judgment

A court decision against a consumer who fails to answer or defend a lawsuit brought by a *creditor* or its *debt collector*.

A default judgment is different than *default* or *defaulting on a debt*.

A consumer may seek to have a default judgment vacated (removed) by making a request to the court after the default judgment is entered.

결석 판결

채권자 또는 그의 추심업자가 제기한 소송에 응하거나 변론하지 못한 소비자에 대해 내려지는 법원 판결.

결석 판결은 체납 또는 채무 불이행과는 별개의 것입니다.

소비자가 결석 판결을 무효화하거나 해제하려면 결석 판결이 최종적으로 처리된 후에 법원에 요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Defaulting on a debt (See Default)**채무 불이행 (체납 참조)****Delinquent debt**

An *account* on which a payment is past due.

A *creditor* may report the past due account to a *credit bureau*.

If an account becomes sufficiently delinquent, the consumer may be in *default* and a creditor may *charge off* the account.

미해결 부채

잔금 상환이 연체된 *계정*.

채권자는 연체된 계정을 *개인 신용 평가 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정의 연체가 장기적으로 미해결되는 경우 소비자는 체납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계정을 상각할 수 있습니다.

Dispute a debt

(also *Contest a debt*)

Consumers who do not recognize a *debt* or do not agree that they owe the amount of debt claimed may contest all or part of the debt verbally and/or in writing.

Under federal, State, and New York City laws, in disputing a debt, consumers have a right to:

- say they do not recognize the debt or owe the debt as claimed;
- request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riginal creditor* if different from the current one; and
- request that the *debt collector* provide information to show that the debt belongs to the consumer and/or that the amount is correct. (See *verification of a debt*.)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채무에 대한 항변)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주장된 채무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소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채무 자체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연방, 주 및 뉴욕시 법률에 따라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소비자는 다음의 권리를 갖습니다.

- 채무를 인정하지 않거나 주장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할 권리
- 현재 채권자와 *원채권자*가 다를 경우 원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요청할 권리
- *추심업자*에 해당 채무가 소비자의 소유이며 금액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정보를 요청할 권리 (*채무 사실 확인서* 참조)

E

Exempt funds

Money that may not be taken by most *creditors* or *debt collectors* to satisfy a *judgment*.

Consumers may choose to use exempt funds to pay a *debt*, but a creditor or debt collector cannot freeze or forcibly take these funds from consumers' bank accounts to pay a judgment.

면제 자금

대부분의 *채권자* 및 *추심업자*가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가져갈 수 없는 돈.

소비자는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면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지만, 채권자 및 추심업자는 판결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소비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거나 해당 자금을 갈취할 수 없습니다.

Exempt Income Protection Act (EIPA)

New York State law that automatically protects a certain amount of money in a consumer's bank account from being frozen or taken by *debt collectors*.

Under the EIPA, if any funds in a consumer's bank account are frozen, the bank must provide the consumer with certain forms, called Exemption Claim Forms. The consumer may use these forms to claim that the frozen funds are exempt.

The following funds (in alphabetical order) are typically exempt from being frozen or garnished:

- Black lung benefits
- Child support payments
- Public assistance (for exampl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 Public or private pensions
- Railroad Retirement Board benefits
- Social Security, including retirement, survivors, and Disability benefits
- Spousal support or maintenance
-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 Unemployment Insurance
- Veterans Affairs benefits
- Workers' compensation

면제 소득 보호법(EIPA)

추심업자가 소비자의 계좌에 있는 특정 금액을 동결하거나 가져가는 것으로부터 자동으로 보호하도록 하는 뉴욕주 법률.

EIPA 에 따라 소비자의 은행 계좌에 있는 자금이 동결된 경우 은행에서 해당 소비자에게 면제 청구서(Exemption Claim Form)라는 특정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이 서류를 사용해 동결된 자금이 면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자금이 동결 및 압류에서 면제됩니다.

- 단진폐증 혜택
- 양육비 지원금
- 공적 부조(예: 빈곤 가정 일시 부조)
- 공적 및 개인연금
- 철도 퇴직자 위원회 혜택
- 소셜 시큐리티 혜택(퇴직, 유족 및 장애 혜택 포함)
- 배우자 부양 및 생활 수당
- 생활보조금
- 실업 급여
- 보훈부 혜택
- 산업재해 보험금

F

Fair and Accurate Credit Transaction Act (FACTA)

Federal law that allows consumers to request and obtain a free *credit report* once every 12 months from each of the three nationwide consumer *credit bureaus*.

Note: Due to COVID-19, consumers can visit [AnnualCreditReport.com](https://www.annualcreditreport.com) to get free online reports more frequently than once a year. Monitor the website for updates.

공정 정확 신용거래법(FACTA)

소비자가 12 개월에 1 번 3 개의 전국적인 *개인 신용 평가 기관*에 무료로 *신용 보고서*를 요청하고 받아보는 것을 허용하는 연방법.

참고: COVID-19 의 일환으로 소비자는 [AnnualCreditReport.com](https://www.annualcreditreport.com) 을 방문하여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연 1 회 무료 온라인 보고서를 더 자주 받을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air Credit Reporting Act (FCRA)

Federal law that promotes the accuracy, fairness, and privacy of information in the files of *consumer reporting agencies* and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see their own *credit reports* and to dispute errors.

공정 신용 보고법(FCRA)

*소비자 조사 기관*내 소비자 파일의 정보에 대한 정확성, 공정성 및 프라이버시를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자신의 *신용 보고서*를 확인하고 오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부여하는 연방법.

Fair Debt Collection Practices Act (FDCPA)

Federal law governing *collection* activity by *debt collectors* that:

- prohibits abusive practices in the collection of consumer debts;
- prohibits unfair and deceptive debt collection practices; and
- gives consumers the right to *dispute a debt* and get a *validation notice* to ensure the accuracy of an alleged debt.

The Act also:

- creates guidelines for how debt collectors may conduct business;
- defines consumer rights when dealing with debt collectors; and
- includes penalties and remedies for violations of the Act.

공정 채권추심법(FDCPA)

추심업자의 추심 활동에 다음과 같이 적용되는 연방법.

- 소비자 채무 추심 중 폭력적인 관행 금지
-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추심 관행 금지
- 소비자에게 *채무에 대한 이의 제기* 및 주장된 채무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통지* 요청에 대한 권리 부여

해당 법은 또한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 추심업자의 사업 방식에 대한 지침 제공
- 추심업자 상대 시 소비자의 권리 정의
- 해당 법률 위반 시 처벌 및 구제 방안 포함

Fake debt (See Phantom debt)

허위 채무(유령 채무 참조)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A federal government agency that enforces consumer protection and U.S. antitrust laws.

In addition to filing a complaint with DCWP, consumers can file a complaint about a *debt collector* with the FTC.

DCWP:

Call 311 or visit nyc.gov/dca

FTC:

Visit ftc.gov/complaint or call toll-free 1-877-FTC-HELP (1-877-382-4357).

연방거래위원회(FTC):

소비자 보호 및 미국 독점 금지법을 집행하는 연방 정부 기관.

DCWP 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 외에도 소비자는 추심업자에 대해 FTC 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DCWP:

311 번으로 전화하거나 nyc.gov/dca 를 방문하십시오.

FTC:

ftc.gov/complaint 를 방문하거나 수신자 부담 전화 1-877-FTC-HELP(1-877-382-4357)번으로 전화하십시오.

G

Garnishment / Income Execution

The act of requiring a *debtor's* employer to withhold a portion of the debtor's wages to pay a *creditor* that has obtained a court order. Unless otherwise authorized by law, a *debt collector* must obtain a court order or *judgment* to carry out a garnishment or income execution.

압류 통고 / 소득 차압

*채무자*의 고용주에게 법원 명령 하에 채무자 급여의 일부를 일부 공제하여 *채권자*에게 상환하도록 하는 것. 법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추심업자는 압류 통고 또는 소득 차압을 이행하려면 법원 명령 또는 *판결*이 있어야 합니다.

H

Harassment

The use of pressure, annoyance, intimidation, or abuse in the attempted collection of a *debt*.

Debt collectors may not harass consumers. Examples of illegal conduct are:

- using or threatening to use violence to harm a person, their reputation, or their property;
- threatening someone with a criminal warrant;
- using obscene, profane, or *abusive language*; and
- causing a telephone to ring or engaging any person in telephone conversation repeatedly or continuously.

괴롭힘

압박, 약 올림, 협박, 또는 폭력을 사용해 *채무*를 추심하려는 행위.

*추심업자*는 소비자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불법 행위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폭력을 사용해 개인, 개인의 명성 또는 재산을 해치거나 그렇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 영장을 가지고 협박하는 행위
- 외설적이거나 불경한 말이나 *폭언*을 사용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또는 계속해서 전화를 울리거나 개인과 통화하는 행위.

Interest

The cost of borrowing money or buying goods or services on *credit*. It is typically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the amount due.

이자

*신용*으로 돈을 빌리거나 상품 및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비용. 일반적으로 납부 금액의 특정 비율로 계산됩니다.

Itemization of a debt

A list or breakdown that must include:

- amount of the debt when the *original creditor* sent it to collection;
- amount of any *accrued interest*;
- amount of any other *collection fees* and charges; and
- any payments made by the consumer.

A *debt collector* must give consumers an itemization of each debt upon request.

채무 명세서

다음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목록 또는 내역.

- *원채권자*가 추심을 시작했을 당시 채무 금액
- *경과 이자* 금액
- 기타 *추심 수수료* 및 요금
- 소비자가 납부한 모든 내역

*추심업자*는 소비자 요청 시 채무 명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J

Judgment

An order issued by a court stating the outcome of a lawsuit.

판결

소송 결과에 따라 발행된 법원 명령.

L

Limited English Proficient (LEP)

A term that refers to individuals who do not speak English as their primary language and who have a limited ability to read, speak, write, or understand English.

영어 소통이 제한적인 개인(LEP)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며 영어를 읽고, 말하고, 쓰고 이해하는 능력이 제한적인 개인을 의미하는 용어.

M

Mini-Miranda Warning

A statement that *debt collectors* must use at the beginning of any communication with a consumer, both in letters and calls. The warning lets consumers know that anything they say and any information they give may be used to collect the *debt*, including in court.

Most debt collectors record *collection* calls.

미니 미란다 경고

추심업자가 소비자와의 모든 서면 및 통화상의 의사소통 서두로 사용해야 하는 성명. 이 경고는 소비자에게 해당 소비자가 하는 모든 말과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소송 등 채무를 추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립니다.

대부분의 추심업자는 추심 통화를 녹음합니다.

Misrepresentation

The use of false, deceptive, or misleading practices in debt collection.

Debt collectors may not make misrepresentations to consumers, including:

- falsely representing or implying that the debt collector is an attorney, legal office, government agency, marshal, or sheriff;
- falsely representing or implying that the consumer committed a crime, or that nonpayment of any debt will result in the consumer's arrest or imprisonment or the seizure, *garnishment*, attachment, or sale of the consumer's property or wages unless the action is lawful and the debt collector or *creditor* intends to pursue it; or
- reporting, or threatening to report, inaccurate credit information to a *credit bureau*.

사실 왜전

추심 중 허위이거나 기만적이거나 오도하는 관행을 사용하는 행위.

추심업자는 사용자에게 다음을 포함한 사실 왜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 허위로 추심업자가 변호인, 법률 사무소, 정부 기관, 집행관 또는 보안관이라고 말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법적으로 허용되고 *채권자* 또는 추심업자가 원하는 것이 아닌 상태에서 허위로 소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거나 채무가 연체 또는 체납될 경우 소비자가 체포 또는 수감되거나 소비자의 재산 및 급여가 몰수, 압류 통고, 압류 또는 판매될 수 있다고 말하거나 암시하는 행위
- *개인 신용 평가 기관*에 잘못된 신용 정보를 신고하거나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O

Original Creditor (See Creditor)

원채권자(채권자 참조)

Outstanding Balance (See Current Balance)

미불 잔금(현재 지불 잔금)

P

Payday Loans

A high-interest loan borrowed against a consumer's next paycheck.

Payday loans are illegal in New York.

급여 담보 대출

소비자의 다음 급여를 담보로 한 고리채.

뉴욕에서 급여 담보 대출은 불법입니다.

Phantom debt (also *Fake debt*)

Debt that is entirely made up and that a consumer does not owe.

Phantom debt schemes have typically involved individuals or businesses that use fictitious names that imply they are lawyers or affiliated with a law firm. The schemers threaten serious consequences if consumers don't pay, including:

- being sued;
- being arrested at work;
- having a bank account closed;
- having wages *garnished*; or
- being forced to appear in court.

The schemers generally do not hold DCWP licenses.

Consumers have a right to request *verification of a debt* from *debt collectors*.

유령 채무(허위 채무)

완전히 허위로 만들어져 소비자가 실제로 소유하지 않는 채무.

일반적으로 유령 채무 수법에는 변호사이거나 법률 사무소 소속임을 암시하는 가명을 사용하는 개인 및 기업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이 수법을 사용할 때 이들은 소비자가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의 심각한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협박합니다.

- 소송
- 근무 중 체포
- 계좌 해지
- 급여의 압류 통고
- 강제 법정 소환

일반적으로 이들은 DCWP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추심업자에 채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Principal

The initial amount of the *debt* or the amount that remains unpaid by a consumer. It does not include *collection fees* and *interest*.

원금

채무의 최초 금액 또는 소비자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 추심 수수료 및 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S

Statute of Limitations

(also *Time-barred debt*)

A certain time after which a *debt collector* may no longer sue a consumer to collect a *debt*.

Debt collectors may not attempt to collect an old debt whose statute of limitations passed unless they tell consumers:

- the legal time limit (statute of limitations) to sue to collect the debt has expired;
- consumers do not have to admit to owing the debt, promise to pay the debt, or give up rights regarding the statute of limitations;
- if sued, consumers may defend the case by informing the court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has expired to prevent the *creditor* from obtaining a *judgment*; and
- any payment consumers make on an old debt will restart the creditor's right to sue.

소멸시효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무*)

특정 기간 후에 추심업자가 더는 소비자의 채무를 추심할 수 없게 되는 것.

추심업자는 다음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난 오래된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 채무를 추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으로 허용된 기간(소멸시효)이 만료됨
- 소비자는 채무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약속하거나, 소멸시효 관련 권리를 포기하지 않아도 됨
- 소송당할 경우 소비자는 법원에 소멸시효가 만료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채권자가 판결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오래된 채무에 대해 소비자가 상환할 경우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다시 얻게 됨

Substantiation of a debt
(See **Verification of a debt**)

채무 사실 입증
(채무 사실 확인서 참조)

T

Time-barred debt (See **Statute of Limitations**)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무(소멸시효 참조)

Tradeline

A term for a credit *account* on a consumer's *credit report*. There is a separate tradeline each time a consumer is approved for *credit*. Tradeline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 credit limit;
- current balance;
- payment history; and
- lender names and addresses.

거래선

소비자 신용 보고서상의 계정. 소비자의 신용이 허가될 때마다 별개의 거래선이 있습니다. 거래선에는 다음이 포함되며,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 신용 한도
- 현재 지불 잔금
- 상환 내역
- 대출자 이름 및 주소

V

Validation Notice

A letter a *debt collector* must give consumers within five days after first contacting them that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about the *debt* and consumer rights.

This notice must tell consumers they have a right to *dispute a debt* and to request *verification of a debt* from the debt collector. Other required disclosures include:

- the amount of the debt;
- the name of the current *creditor*;
- a statement that, upon consumer request and within 30 days, the debt collector will provide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riginal creditor*;
- the address where consumers should mail a letter to dispute a debt;
- the debt collector's *DCWP license number*;
- the name of the debt collector as it appears on the DCWP license;
- a call-back number to a phone that is answered by a natural person;
- the name of the person to call back;
- if the consumer may obtain from the debt collector any communications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 a statement that this glossary of common debt collection terms is available in multiple languages on the DCWP website nyc.gov/dca.

확인 통지

추심업자가 소비자와의 첫 연락 후 5 일 이내에 제공해야 하는 통지. 소비자의 채무 및 소비자 권리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담겨있습니다.

이 통지는 소비자가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추심업자에게 채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그 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채무 금액
- 현 채권자의 이름
- 소비자 요청 시 30 일 이내에 추심업자가 원채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제공할 것이라는 성명
-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소비자가 서신을 보낼 주소
- 추심업자의 *DCWP 면허 번호*;
- DCWP 면허상 추심업자 이름
- 실제 사람이 응답하는 답신 전화번호
- 답신을 할 개인의 이름
- 추심업자가 소비자와 영어 외의 언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DCWP 웹사이트(nyc.gov/dca)에서 이 추심 관련 일반 용어집을 여러 개의 언어로 확인할 수 있다는 성명

Verification of a debt

(also *Substantiation of a debt*)

A consumer has a right to request that the *debt collector* provide documentation to show that the *debt* belongs to the consumer and/or that the amount is correct.

In response to a consumer's request for verification of the debt, the debt collector must do the following:

- Provide written documentation from the *creditor*—not the creditor's debt collector—confirming the debt. An example is a copy of a final statement (bill) by the *original creditor* showing the amount owed.
- Stop all *collection* activity and consumer contact until the verification is provided.

채무 사실 확인서

(채무 사실 입증)

추심업자에 해당 채무가 소비자의 소유이며 금액이 정확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서류를 요청할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가 채무 사실 입증을 요청할 경우 추심업자는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채권자의 추심업자가 아닌 *채권자* 본인으로부터 채무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 제공 (예: *원채권자*가 제공했으며 채무 금액이 표시된 최종 명세서 사본)
- 채무 사실 확인서를 제공할 때까지 *추심* 활동 및 소비자 연락 중단

Z

Zombie debt

Debt that is very old and no longer owed but that a *debt collector* suddenly seeks to collect.

Zombie debt may include:

- debt already settled;
- debt from a *bankruptcy discharge*;
- *time-barred debt*;
- debt that no longer shows up on a consumer's *credit report*; and
- debt never owed.

Consumers have a right to *dispute a debt* and request that the debt collector provide *verification of a debt*.

좀비 부채

매우 오래된 *채무*로 더는 상환 의무가 없지만, 갑자기 *추심업자*가 추심하고자 하는 것.

좀비 부채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이미 조정된 채무
- *파산 면책*된 채무
- *제소기간이 만료된 채무*
- 소비자의 *신용 보고서*에 더는 표시되지 않는 채무
- 소유한 적 없는 채무

소비자는 *채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추심업자에게 *채무 사실 확인서*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